

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
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 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여,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특별회계 존속기한 신설(안 제18조의2)
 - 특별회계 존속기한 : 2023년 12월 31일까지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의2(존속기한)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<신 설></u>	<u>제18조의2(존속기한)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 지로 한다.</u>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9조(회계의 구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
② 특별회계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목적세에 따른 세입·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소관 실·과		주민복지과
입 안 자	과 장	변 동 석
	담 당	이 정 화
	담 당 자	황 보 미 (480-5124)